



강북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 일부 원고 소취하에 대한 검토보고

1. 푸른도시과-15409(2014.10.15)호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0814사건의 일부 원고들 소취하에 대한 의견’(정부법무공단(작성일: 2016.2.5.))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0814 부당이득금
- 원 고: 진흥균 외 360(우리구 대상: 14명)
- 피 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 27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손범규

나. 사건개요

- 원고들과 에스에이치공사 사이에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 상의 분양가격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데, 이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공익사업법」)제78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분양계약이(일부)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다. 추진경과

- 2014. 7.16.: 소장접수
- 2014.10.16.: 응소방침
- 2014.11.21. ~ 2016. 2.: 소송 공동대응 진행중
- 2016. 2. 1. ~ 2. 2.: 원고들 15명 소취하서 제출(우리구 3명)
- 2016. 4. 8.: 제8회 변론기일 예정

라. 소취하에 대한 검토의견

- 강북구 원고 김용진, 허경순(수유6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이미선(강북대형공원 조성공사)이 제1심 소송과정을 통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본문의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공익사업법령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소취하를 하는 것으로 보임.

- 이미 해당 원고들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이상, 다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이나, 이 사건 원고들의 소제기에 관련 자료수집 등 적극적

으로 응소한 이상, 청구기각의 판결과 소송비용 청구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 원고들(강북구 3명)의 소취하에 부동의하고자 함. 끝.

★주무관

정영미

조경시설팀장

이용우

푸른도시과장

김운식

도시관리국장

02/15
이동일

협조자

시행 푸른도시과-2327 () 접수 ()

우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 <http://www.gangbuk.go.kr>

전화 /전송 02-901-6930 / 부분공개